

보도	2026.8.5.(수) 10:00	배포	2026.8.4.(화)		
담당부서	자본시장감독국 파생상품시장팀	책임자	팀 장	김윤조	(02-3145-7600)
		담당자	선 임	장 샘	(02-3145-7605)

[「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」 추진 과제]

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「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」 개최

I 간담회 개요

- 금융감독원(서재완 부원장보)은 금융투자협회 및 주요 증권사 임원과 함께 파생결합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
 - 금융감독원·금융투자협회·주요 10개 증권사는 지난 3개월간 제도개선 T/F*를 운영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
 - * 「파생결합증권·사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T/F(‘26.3월~6월)」
 - 금번 간담회를 통해 T/F를 진행하여 마련한 개선안의 내용을 논의 하였으며 향후 제도개선 추진 일정계획 등을 구체화
- 참석자들은 파생결합상품 발행액이 지속 증가하고 국내 주식시장 등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,
 - 파생결합상품의 제조부터 판매 후 관리 단계까지 증권사의 자율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음

「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」 개요

☑ 일 시 : '26. 8. 5.(수) 10:00~11:00 (1시간)

☑ 장 소 : 금융투자협회 22층 중회의실

☑ 참 석 자

- 【금 감 원】 서 재 완 금융투자 부원장보, 박 시 문 자본시장감독국장
- 【금융투자협회】 천 성 대 증권선물 본부장, 정 형 규 자율규제 본부장
- 【증 권 사】 10개 증권사* 파생결합상품 및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

* 한국투자·NH투자·미래에셋·삼성·신한투자·KB·하나·신영·교보·메리츠증권

시간	행사 내용
10:00 ~ 10:10	【개회사 및 모두발언】 서 재 완 부원장보
10:10 ~ 10:20	【개선안 발표】 ▶ 설계·심사 : 사전적인 자율점검 체계 확립 ▶ 판매·사후관리 : 적시성있는 정보 제공 및 내부통제 강화
10:20 ~ 11:00	【의견 교환 및 향후 추진일정 등 논의】

II 모두발언 주요 내용

-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홍콩 H지수 ELS 투자자 손실 사례와 시장 변동성 증가 등을 이유로 투자자를 사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
- 이를 위해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파생결합상품의 제조·심사 단계에서 사전 자율점검 체계를 확립하고,
 - 판매 및 사후 관리 단계에서도 투자자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는 한편, 증권사 자율점검 주기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
- 아울러, 서재완 부원장보는 개선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하였음

Ⅲ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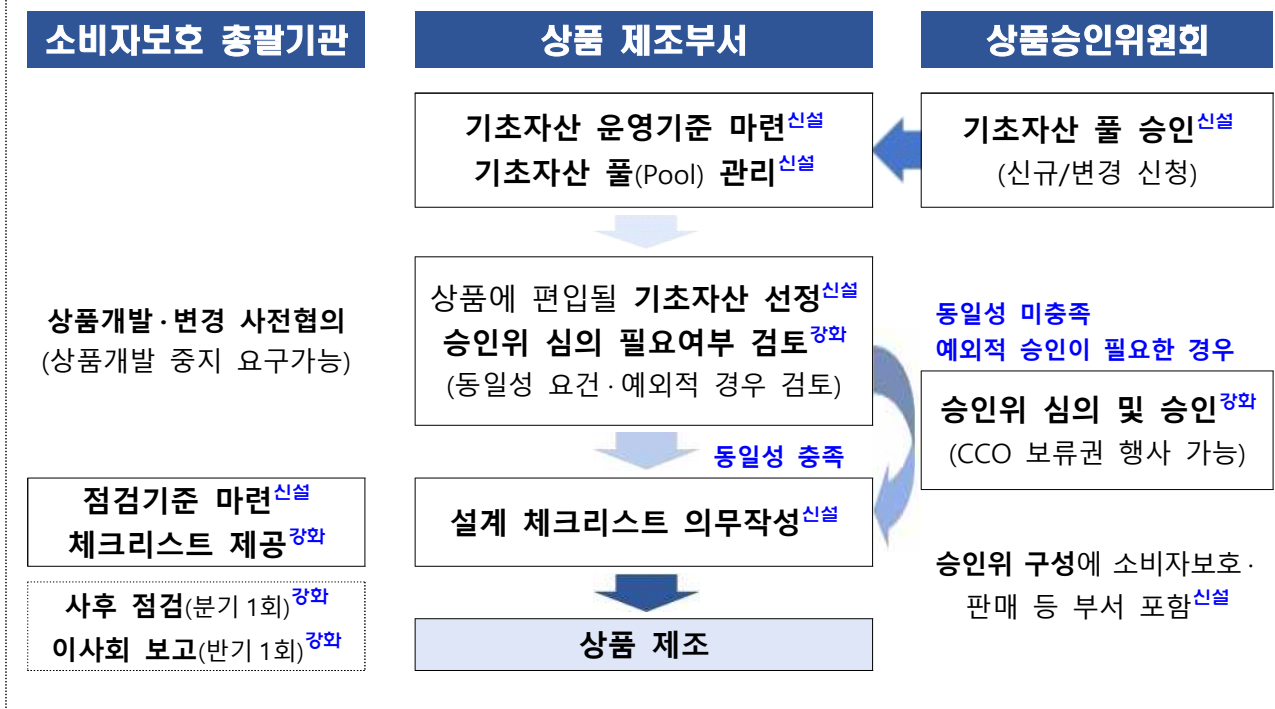
주요 발표 내용

1

상품설계 · 심사 단계

- 파생결합상품의 제조부서가 자체적으로 상품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**사전적인 상품설계 · 심사 프로세스 구축**

사전적 상품설계 · 심사 프로세스



A1 상품설계 체크리스트 마련 및 작성 의무화

- 증권사 내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상품 설계시 점검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조부서에 제공하고
- 제조부서는 상품 설계할 경우 체크리스트를 필수적으로 작성하고 상품의 동일성 요건의 충족 여부도 반드시 점검*

* 상품승인위원회에서 기존 승인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(동일성 요건을 충족)인 경우 상품승인위원회 심의절차가 생략되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

주요 표준 점검기준 신설(안)

구 분	내 용
금융소비자의 권익침해요소 점검	기존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민원발생 소지 가 없는지 고려
	동일한 상품을 추가로 제조하거나 재제조 하는 경우에도 새롭게 발생 가능한 잠재적 위험 요소를 고려
합리적 상품설계	기초자산 선정과 상품구조 설계 시 기초자산의 최근 변동성과 가격 추이를 고려
	기초자산이 특정 개별종목 주식 으로 과도하게 쏠리지 않았는지 고려

A2 기초자산 관리 체계화

- 제조부서는 선제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초자산 풀(Pool) 관리 및 기초자산 선정을 위한 **운영기준**(사용제한 기준 포함)을 마련
- 운영기준에 따라 기초자산 풀(Pool)을 관리하고 기초자산 풀에서 상품 특성·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품에 편입할 기초자산을 선정

B1 상품승인위원회 운영기준 정비

- 상품승인위 구성에 소비자보호·준법감시·판매(영업관리 등) 부서를 필수 포함하고 CCO(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)에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품출시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 부여

B2 상품승인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

- 기초자산 유형·결제통화·손실배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승인된 상품과 동일하지 않은 상품으로 구분될 경우에는 다시 상품 승인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
- 기초자산 풀을 새로 선정하거나 기존 승인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상품승인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기초자산 적정성을 주기적 점검
- 시장환경 변화 등으로 기존 승인 대비 투자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된 상품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심의 진행

- 투자자의 **합리적 선택권 보장**을 위해 **판매 전·후** 적시성 있는 **정보제공**을 **강화**하고 증권사의 **사후 내부통제** 기능을 **강화**

판매 전·후 단계 개선과제

판매 시점	사후 관리	
[투자 설명자료 개선]	[적시성 있는 투자자 정보제공]	[내부통제 강화]
① 파생결합사채 유의사항 ② 수익률 표기 개선 ③ 기초자산의 최고·최저 가격 도달여부 표기 ④ 중요옵션을 주요사항 요약부분에 표기	▶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근접 시 낙인근접·중도상환 가능 사실 안내 ▶ 조기상환 순연 시(실패 시) 중도상환 가능 사실 및 방법 안내 ▶ 조기·만기 수익상환 시 기계적 재투자 관련 유의사항 안내	▶ 점검·보고주기 단축 자율점검 주기를 연 1회→분기1회로 단축 ▶ 부적합 판매비율 관리 증권사 내부의 부적합 판매 관리를 체계화

C 투자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품 설명자료(공시자료)를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·구체화*

- * ① 파생결합사채 유의사항을 투자자 유의사항 및 투자설명서 개요에 추가하여 강조
 ② 연 환산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병기하여 표기
 ③ 최근 기초자산 가격의 최고·최저 도달 여부를 투자설명서 주요사항 요약에 표기
 ④ 이슈어콜 등 중요옵션은 투자설명서 주요사항 요약 부분에 표기

D1 고난도 ELS 낙인근접 알림

- 고난도 ELS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배리어에 근접(10%p)한 경우에 사전 안내(최초1회)하는 'ELS 낙인근접 알림'을 발송
- 투자자는 낙인근접 상품을 계속 보유하여 수익상환을 기다릴지 중도상환을 선택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고려* 가능

- *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에 도달하는 경우 중도상환 금액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나, 투자자가 이를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중도상환을 고려하지 못했던 문제 해결

D2 중도상환 안내 강화

- 투자자에게 조기상환 순연(실패) 안내 시 중도상환을 선택 가능한 사실 및 중도상환 방법 등 사항을 추가로 안내

D3 기계적 재투자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

- 조기·만기 상환으로 수익을 실현한 투자자에게 기계적인 재투자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재투자시 유의사항* 안내

* 투자자가 수익상환을 한 후 동일한 상품에 다시 가입하여도 기초자산·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수익상환 달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등

D4 고난도 상품 자율점검·보고 주기 단축

- 자율점검(연1회→분기1회) 및 이사회 보고(연1회→반기1회) 주기를 단축

D5 고난도 상품 부적합 판매비율 관리

- 증권사가 부적합 판매의 관리비율을 내부적으로 설정하여(판매채널·고령자 여부 등으로 차등 가능) 부적합 판매 비율을 체계적으로 관리

IV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

- ☐ 간담회를 시작으로 파생결합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개선과제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
- 금투협회의 자율규제 규정을 개정('26.9월)하여 각 증권사 내규에 반영하고, ELS 낙인 근접안내 알림 등 시스템 개선작업을 '26년 중 완료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와 긴밀히 소통할 예정
- ☐ 금번 제도개선으로 파생결합상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아울러,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투자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